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補充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는 委員 있음)

○ 委員長 朴尙東 아니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李聲九委員 그러니까 財團……

○ 委員長 朴尙東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너무 裝置를 金炯奎委員님께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具體적으로 여기 지금 條例案 第1條부터 第9條까지 전부 하나 하나 質疑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맡겨봅시다. 맡겨보고, 우리가 監査를 할 때 반드시 監査資料에 의해서 監査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來年度 市政開發院이 만들어져서 正常的인 절차에서 잘 못갈때, 實績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決議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開發院 廢止에 우리 同意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諒解를 좀 하고 합시다……

(「委員長님, 제가 正式으로 動議發言을 하겠습니까」하는 委員 있음)

○ 委員長 朴尙東 네.

○ 柳準向委員 豫算審議에서도 충분히 다룬 것이고, 오늘도 진지한 討論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承認을 하되 단, 財團法人 定款 作成時에 우리 市議會가 直接, 間接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이것을 챙겨주시고, 또 이 開發委員會가 效率性이고 能率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에 별 效率性이 없으면 來年度에는 이 문제가 變動될 可能性도 있다는 前提下에 이것을 承認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 委員長 朴尙東 일단 知性인들이니까 한번 맡겨봅시다.

○ 柳準向委員 네.

○ 委員長 朴尙東 柳準向委員의 發言을 企劃管理室長께서 參考로 하셔서 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 李聲九委員 그런데 定款에다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市議會 監督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柳準向委員 그러니까 方法이 있으면 넣어달라는 條件을 제시했고……

○ 李聲九委員 對答 좀 들겠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主務官廳의 立場에서 모든 監査를 일반 行政府가, 저희 執行部가 받는 것과 똑같이 市議會 監督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基本으로 基調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議會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나, 그것을 한 번 명확하게 검토해서 그 최대한 線까지 保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聲九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保障하는 條件으로 柳委員님 動議를 再請합니다.

○ 委員長 朴尙東 네, 異議가 없으시죠?

(「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通過된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이외의 자의 출

<p>연금으로 조성한다.</p> <p>제3조(출연금)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p> <p>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서울특별시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p> <p>제5조(사업계획등 승인)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결산서 제출)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비밀업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시행규칙) 기금 및 출연금의 운영관리,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인으로 본다.</p> <p>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p> <p>-----</p> <p>○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淸掃事業本部條例案과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해서 조금 質疑를 하셔도 좋겠습니다.</p> <p>(「質疑 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네, 말씀하십시오.</p> <p>○全潤杓委員 淸掃事業本部 設置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서울市民이 가장 지금 先決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이 淸掃問題하고 交通問題입니다. 서울市에서 지금 本部를 설치해서 市民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淸掃本部 設置의 當爲性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p> <p>○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市의 問題는 市民生活에 있어서 극히 아주 皮膚에 와 닿는 것 중에 淸소가 제일 큰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淸소가 잘되면 여러 가지 環境이라든지 또 生活의 水準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돋보이고 또 실지 그렇게 內實化 될 수 있는 그런 狀況이라고 判斷이 되는데 이 쓰레기 發生量이 하루에 지금 3萬 2,000톤, 8.5톤 트럭으로다 3,800臺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타고, 안 타고, 버릴 것, 안 버릴 것 전부 따지지 않고 한데 몰아서 난지도 100여萬坪에다 계속 갔다 부어서 난지도를, 100餘萬坪되는 땅을 70m가 넘는 완전히 산으로써 變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年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金浦海岸埋立地에다 별도로</p>
--	--